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2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신동윤 의원, 김보경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20.12.10.)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함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어려운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의 제목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을 “(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본계획” 을 “종합계획” 으로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을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을 “종합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4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

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화사업” 을 “지능정보화사업” 으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8조의2)의 제목 “(정보화 추진 지원)” 을 “(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사업을” 을 “지능정보화사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 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정보화 교육)” 을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의 제목 “(정보보호)”를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u></p> <p>제1장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u>지역정보화</u>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지역정보화</u>”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정보취약계층”이란 <u>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u> 등에 자유</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u></p> <p>제1장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 ---<u>지능정보화</u>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p> <p>제2조(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능정보화</u>”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p> <p>4. ----- <u>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u> -----</p>

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생략)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현행과 같음)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능정보화 -----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능정보화-----
-----대구광역시

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 9. (생략)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

② --- 종합계획----- 정
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

③ 종합계획-----
-----.

1. 지능정보화 -----
2. 지능정보화-----
3. ~ 9. (현행과 같음)

10. ----- 지능정보화 -----

<삭 제>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신 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정보 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1. ~ 2. (생략)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 ⑦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

-----.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능정보화-----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역
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
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
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
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
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생략)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
조정
3. (생략)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2. ----- 지능정보화

3.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4. ----- 지능정보화-----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
정보화 ----- 지
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

1. (현행과 같음)
2. ----- 종합
계획 및 실행계획-----
3. (현행과 같음)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 7. (생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 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보화 추진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4. 지능정보기술-----

5. ~ 7. (현행과 같음)

8. ----- 지능정보화 책임관-----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 .

③ ----- 지능정보화사업-----

----- .

제9조의2(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① -

위에서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9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 3. (생략)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

1. (현행과 같음)

2. ----- 지능정보화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지능정보화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

1. 지능정보화 -----

2. ~ 3. (현행과 같음)

4. ----- 지능정보화-----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생략)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
~~-----~~

② ~~-----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
~~-----~~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
~~-----~~

② ~~-----~~
~~----- 지능정보화-----~~
~~-----~~
~~-----~~

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
~~-----~~

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생략)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능정보서비스 -----.

② ---- 지능정보서비스 -----
----- 지능정보서비스-----
-----.

제15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지능정보화-----지능정보화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지능정보서비스-----

② (현행과 같음)

1.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

전부 지원

3. (생략)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 지능정보서비스 -----

-----.

제20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야 한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 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 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